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2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 강명구·박충권·김민전

유상범 • 김소희 • 고동진

엄태영 • 이성권 • 강대식

박덕흠 • 윤한홍 • 배준영

이종욱 • 김 건 • 곽규택

이인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탄핵소추의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소추안의 일사부재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일사부재의) (생 략)	제92조(일사부재의)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다만, 새
	로운 탄핵소추의 사유를 기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